



수신 일회용 수송포장하는 제조·수입·판매자  
(경유)

제목 일회용 수송(택배) 포장 기준 안내

1. 일회용 수송 포장폐기물의 발생 저감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「제품의 포장재질·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[별표1] 비고 제11호에 따른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이 2026. 4. 30.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2. 이에 「일회용 수송(택배) 포장 기준」을 안내하오니, 소비자에게 일회용 수송(택배) 포장하는 제조·수입·판매자께서는 (붙임)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시고, 포장공간비율 축소 및 과대포장 방지 등을 통해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일회용 택배(수송) 포장기준 안내 >	
○ (준수대상) 제품의 제조·수입 또는 판매자	※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500억원 미만은 제외
○ (대상범위) 「제품의 포장재질·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별표1에 따른 제품*을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택배 포장	* 음식료품류, 화장품류, 의류(와이셔츠류·내의류), 전자제품류(충전기, 케이블, 이어폰, 마우스 등), 세제류, 의약외품류, 잡화류(완구·문구·인형·지갑·허리띠), 종합제품
○ (준수사항) 포장 횟수 1차 이내, 포장공간비율* 50% 이내	* 포장재 면적 대비 제품이 차지하는 면적을 제외한 공간의 비율
○ (벌칙)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(1차100만원, 2차200만원, 3차이상300만원)	※ 수송포장기준 가이드라인: 市 홈페이지 - 새소식 「일회용 수송(택배) 포장기준 안내」 확인

붙임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가이드라인 1부. 끝.

파 주 시 장



---

주무관 **박진홍**      재활용팀장 **조용훈**      자원순환과장 **심재우**      전결 2026. 6. 8.

협조자

시행 자원순환과-20847      (2026. 6. 8.)      접수

우 10932     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-11, 2층 자원순환과 (금촌동)      / [www.paju.go.kr](http://www.paju.go.kr)

전화번호 031-940-4471      팩스번호 031-940-4739      / 76040601@korea.kr      / 대국민 공개